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441
----------	------

2026년 3월 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2월 9일, 박춘선 의원 외 33명
- 나. 회부일자: 2026년 2월 12일
- 다. 상정일자: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6년 3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박춘선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- 기후위기, 생물다양성 감소 등 복합적인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 주도의 일회성 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.
 - 그동안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과 거버넌스 활동이 단발적·비정기적으로 운영 되는 한계가 있어,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관 협력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.
 -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, 환경교육 네트

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에 ‘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’를 추가하여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(안 제4조제2항제10호).
-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‘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’을 추가하여 민·관·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 조성(안 제12조제2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- 현행 조례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제12조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4조제2항제10호는 환경교육계획에 ‘민간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안 제12조제2항제5호는 환경교육센터 수행 업무에 ‘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
2. 환경교육의 현황
3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4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5.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
6.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실행 방안
7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
8.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
9.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
10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~ ④ (생략)

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(생략)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"기초환경교육센터"라 한다)에 대한 지원
4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③ ~ ⑤ (생략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

제1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민관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